

도축장에서의 구제역 방역 문제점 및 대책

박재명, 강신석, 이종진, 최필규, 최해연

충청북도축산위생연구소 북부지소
(접수 2001. 3. 28, 개재승인 2001. 4. 10)

Prevention of FMD in slaughter house

Jae-Myung Park, Shin-Seok Kang, Jong-Jin Lee, Pil-Gue Choi, Hae-Yeon Choi

Northern Branch, Chungbuk Livestock and Veterinary Research Institute, Chungju, 380-230, Korea
(Received 28 March 2001, accepted in revised from 10 April 2001)

Abstract

구제역 발생시 구체적인 방역요령은 “구제역 긴급 행동지침”에 따라 방역조치가 수행되며, 이 요령에서 정하지 못하는 사항들은 행정지침으로 시달린 방법에 따라 수행하게 된다. 본 기고는 구제역 방역을 일선에서 시행한 결과를 토대로 재검토한 바, 모든 감수성 동물은 최종도착지가 도축장인 점을 감안할 때 도축장방역이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구제역 긴급 행동지침”이 구체적 이지 못하였으며 일선 방역·검사기관의 능력과 여건이 고려되지 않고 방역 및 검사업무는 물론 제반 행정사항을 검사원에게 일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업무가중에 의한 검사처리능력의 한계점을 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따라서 “구제역 긴급 행동지침” 및 자체 가상 시나리오 작성시 도축장 방역을 보완하여 유사시 효율적인 방역·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 ① 검사원의 증원방안
- ② 검사업무 보조원 확보 방안(기능직 공무원 대체)
- ③ 정육 및 부산물 처리장 선정(특히 오수 및 장내용물 처리방안)
- ④ 사법권의 적절한 활용방안

개요

2000. 4. 11 충북 충주지역에 구제역 발생이 공식적으로 인정됨에 따라 대대적인 구제역 방역활동이 민·관·군의 합동으로 전개되었다.

그동안 구제역과 직·간접적인 관련이 있는 대부분의 양축농가와 공무원 등은 인적·물적 피해를 감수하고 헌신적 방역활동을 한 결과 구제역 발생지 6농가 131두 가축의 살처분을 비롯하여 의사구제역 신고접수처리 55건, 예방접종

Corresponding author : Jae-Myung Park, Northern Branch, Chungbuk Livestock and Veterinary Research Institute, Chungju, 380-230, Korea. Tel) 043-220-5644, Fax) 043-220-5646

148,237두, 도축검사 21,780두, 혈청검사 4,989두, 예방접종 후유증 조사 86건, 기타 역학조사·질병예찰·발생농장 시험입식사육 등 적지 않은 구제역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결과 현재 까지 재발이 없지만 아직도 끝났다고 감히 단언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구제역 방역은 크게 농가 방역과 도축장 방역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농가 방역은 구제역의 신고접수부터 가축질병예찰, 이동제한, 혈청학적검사, 소독강화 등 다양한 방법에 의해서 관리하고 있으며, 도축장 방역은 살처분가축을 제외한 모든 가축은 도축장으로 유입된다는 개념하에 임상검사와 혈청학적검사에 주안점을 두고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구제역 긴급행동지침에 의하면 구제역방역은 방역관·검사원에게 일임된 방역 체계로 되어 있으나 일선기관에서는 행정적·제도적 장치가 부족한 실정이다. 즉 방역관과 검사원은 전체적인 발병의 양상과 통제 관리 및 순수한 검사업무에 종사하여야 하나, 현장에서는 보조인력 부족 및 행정적 업무의 처리비중이 높아 방역·검사에 전념할 수 없는 상황이다. 도축장내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처리과정은 검사원의 지휘를 받아야만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관계로 검사원의 업무가중은 물론 각종 법적인 책임도 면할 수가 없는 체제로 되어 있다. 또한 현행 구제역의 방역 행동요령은 도축장에 대한 방역 관리가 농장방역에 비해 체계적이지 못한 면이 있고 빈번한 지침변경으로 혼선을 겪는 경우도 있었다. 사육하는 가축의 최종도착지가 도축장이며 도축장 방역이 어느곳 못지 않은 중요성을 갖고 있는 사안으로써 이번 충북 충주지역의 구제역 방역을 담당한 일선기관으로서 도축장 방역에서 발생한 제반 문제점 등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여 그 대안을 제시코자 한다.

현황 및 문제점

가. 도축물량의 증가

구제역의 발생은 도축물량의 증가와 직결된다. 오염지역내 감수성동물을 감소시키기 위한

방역정책과 시중시세 보다 높은 수매가 또는 가격하락을 우려한 양축농가의 홍수출하, 작업장 경영자의 경영수지 개선을 위한 도축물량의 유치 등 관련인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도축물량은 평시물량의 2~4배에 달하게 된다. 또한 평상시와 다른 부산물 처리 방법에 따라 대량으로 발생되는 부산물과 소독·수작업에 의한 포장 및 냉장차 탑재는 도축 소요시간을 필연적으로 연장시키게 된다.

나. 도축공정 지장 및 부산물 유출 우려

현행 구제역발생지역에서 출하된 가축의 도축방법은 도살·해체후 정육을 제외한 모든 부산물은 원칙적으로 폐기하도록 되어 있어 도축 후 추가로 발골공정이 따르게 된다. 따라서 별도의 부산물처리로 정상적인 도축공정에 지장을 초래하게 되고 각종 소독약의 사용으로 축산물의 위해가능성 증가 및 부산물유출이 우려된다.

다. 검사원에 과중한 업무부여

구제역 발생지에는 방역관, 검사원의 인원증원이 필수적이나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못하여 임무와 권한만 증가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다음은 구제역 방역기간중 작업장에 배치된 검사원에게 부여된 업무이다.

- ① 도축검사 신청서 접수 및 구제역 임상검사
- ② 도축출하승인가축 여부 또는 구제역예방접종 여부 확인
- ③ 이동제한 지역에서 출하여부 확인(경계지역, 보호구역 구별)
- ④ 해체검사 및 작업장 위생 관리
- ⑤ 생산된 정육의 24시간 냉장관리후 pH측정 및 출고 증명서 발급
- ⑥ 부산물 운송차량에 대한 적정 적재여부 확인
- ⑦ 부산물 발생시 소독지시 및 봉인, 부산물 운송증명서 발급후 반출
- ⑧ 부산물처리장의 적정 열처리 여부 관리감독

- ⑨ 종돈수매가축의 종돈확인후 도축검사 증명서 발급
- ⑩ 기타 가축의 도축검사 증명서 발급
- ⑪ 도축장 출입차량 소독감독
- ⑫ 기타 수시로 위임업무 부과

라. 부산물처리 문제점

도축과정에서 정육을 제외한 모든 부산물은 원칙적으로 소독후 매몰·열처리하도록 부산물 처리지침에 규정되어 있다. 물론 부산물내에 잔류 가능성이 있는 바이러스의 사멸효과를 위한 것이며 부산물 처리에 관한 한 작업장에서 자체처리가 불가능하여 수거후 소독하여 열처리(랜더링)업체로 반출하여야 한다. 그러나 부산물 대부분이 상품으로서 가치를 지니고 있어 효과적인 수거·폐기가 용이치 않아 사법권 개입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또한 부산물은 내장, 뼈, 가죽, 분뇨로 구성되어 있으나 내장과 뼈부산물에 대한 방역만 강조한 나머지 분뇨에 대한 관리가 부실하게 되고 분뇨 처리시설 선정이 지역됨으로써 운용 면에서 효율적이지 못하게 된다. 아울러 도로에 설치된 방역검문소가 차량소독외에 가축 및 축산물수송차량을 검문하고 통제해야 할 중요한 임무중에 하나로 인식되어야 한다.

마. 현장위생관리의 어려움

작업장편의 민원건의사항을 수용함에 있어 일선 검사업무를 고려하지 않는 민원인 위주로

수용되어 검사원의 업무 한계점을 초과한 결과가 되었다. 즉, 검사원의 인원은 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 가공장을 지정하여 검사원 한사람이 2개소를 담당하는 관리체계가 되어 현장위생관리가 더욱 어렵게 되었다.

바. 님비현상 발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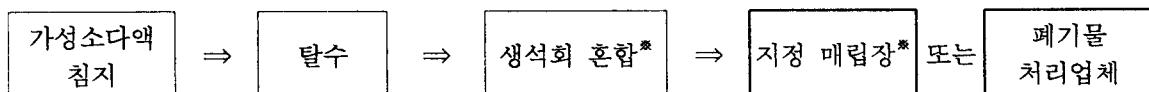
구제역발생시 대대적인 방역으로 질병의 중요성이 부각되어 님비현상은 불가피하게 발생하여 전염병이 발생한 타 시도 가축의 자기 지역내 반입을 적극 저지하게 만든 계기가 되었다. 즉, 구제역 발생지역인 홍성에서 출하된 돼지를 한국냉장에서 도축함으로써 지역 양축농가 뿐만 아니라 이동경로 주변 농가의 집단적인 반발이 발생하였고 인접 시·군간, 면·리간 주민들 사이에도 가축수송차량의 진입저지 등 갈등이 첨예화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도축장에서의 검사업무에도 영향을 끼쳐 혼란을 야기하였다.

대 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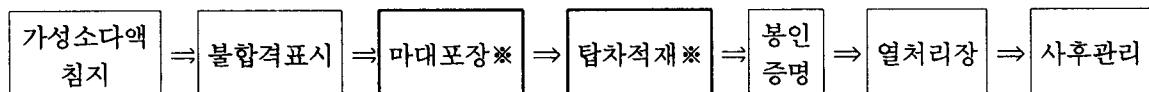
가. 적정 검사인력의 확보

긴급상태에서 작업장 전체(생체검사장, 도축장, 가공장, 부산물처리장)를 관리하는데 최소한 4명의 검사원(또는 방역관)이 필요하나 소요되는 검사원 지원과 타 기관의 협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질병진단소나 축산직공무원으로 하여금 도축검사에 따른 부

○ 위장관 내용물



○ 부 산 물



* 표는 중점 관리지점임

그림1. 폐기물 처리 흐름도

수적인 행정업무(각종 증명서, 신청서, 부정행위 단속, 단순업무 지정 등)를 지원토록 함으로써 검사원은 고유의 검사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도축검사 신청서 작성, 차량소독, 작업장 통제, 부산물 소독관리, 도축육 pH검사 등은 누구나 단기간 교육에 의해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시·군에는 수의직 공무원을 배치하여 행정기관에서도 소속 방역관으로 하여금 능동적으로 방역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체제가 되어야 한다.

나. 검문소의 역할 강화

최소한 검사원은 감시의 역할이 아닌 검사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전환되어야 한다. 부산물의 유출 등 작업장에서 부정행위가 발생하더라도 이동제한 지역내 설치된 방역 검문소에서 반드시 검문을 받는 체계가 구축되어야 하고 또한 사법기관에서의 적극적인 협조가 병행되어야 한다. 또한 검문지점의 설정은 기초단체가 아닌 광역단체에서 지정하여 운영토록 함으로써 자자체간 중복 검문소 설치 등을 피할 수 있다.

또한 도축장은 관계자외 무단출입, 부산물의 유출가능성 등 사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많아 적정한 통제력 및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사법인력(경찰)의 지원이 필수적이다. 또한 검문소는 필히 설치하되 이동제한지역내 일반 검문소와 차별화되어야 한다.

다. 일관성 있는 행정체계

일선 양축농가 또는 축산물작업장에서의 각종 민원 전의로 인해 빈번히 업무지침이 변경됨으로써 업무의 혼선을 야기하게 된다. 또한 현장감이 없는 임시방편의 대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최종감독은 일선 검사기관으로 이관된다. 따라서 상급행정부서는 정책수립시 일선기관의 업무능력을 충분히 고려해야 하고, 수매지침 등 검사원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항은 수매대

행기관에 일임하는 등 역할분담을 적절히 조정하여야 한다. 또한 비상시에는 축산물작업장에 대한 자치단체의 역할이 증가되어야 한다. 방역평가시 통제소의 역할중 소독검문과 이동제한 통제기능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며 농장방역과 도축장방역의 평가 비중은 각각 50:50 수준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라. 비상 매립지 선정

도축장에서 발생되는 위장관 내용물(분뇨 포함)을 위한 매몰장소는 구제역 발생이전에 선정되어 있어야 하며, 비상시에는 즉시 매몰 가능토록 인근 주민과 협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매립지 선정이 지연되면 도축장은 폐기용 부산물과 더불어 폐기물 적체에 의한 오염으로 인해 위생적인 작업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

결 론

구제역 방역에 관한 한 모든 정책과 지침은 일선 방역기관의 적정업무 능력에 초점을 두어 검사업무에 충실할 수 있는 여건이 선행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그에 대한 대안을 즉시 제시하여야 한다. 사전 준비와 겸증되지 않은 행정지시는 기대하는 효과를 거두지 못할 뿐만 아니라 업무능력의 한계를 넘어 결과적으로 일선 방역관과 검사원 신분상 불이익 요인이 되며 결과적으로 방역상 공백이 발생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유사시를 대비한 “구제역 긴급 행동지침” 및 자체 가상 시나리오 작성에 있어서 도축장 방역이 한층 강화되어야 하며 그중 ① 검사원의 증원방안 ② 검사업무 보조원 확보 방안(기능적 공무원 대체) ③ 정육 및 부산물의 처리장 선정(특히 오수 및 장내용물의 처리방안) ④ 사법권의 적절한 활용방안이 필히 구체적으로 포함되어야 한다.